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6955
----------	-------

제안연월일 : 2026. 2.

제안자 : 정보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국가정보원 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007	박선원의원	2024.10.29.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 회부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6.2.3.) 상정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위원회(2026.2.12.) 의결
	2209712	김상훈의원	2025.4.10.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5.9.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 회부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6.2.3.) 상정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위원회(2026.2.12.) 의결

2. 대안의 제안이유

가.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2.3.)에서 위 2건

의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나.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위원회(2026.2.12.)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결과를 받아들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국가정보원 특정직 3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1년, 특정직 4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2년, 특정직 5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3년씩 각각 연장함으로써 국가정보원 전문인력의 조기퇴직을 방지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역량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제2호).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나목 중 “7년”을 “8년”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12년”을 “14년”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18년”을 “21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급정년에 달한 재직 중인 자에 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계급정년에 달한 자로서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특정직직원의 계급 정년</p> <p style="padding-left: 20px;">가.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나. 3급 직원: <u>7년</u></p> <p style="padding-left: 20px;">다. 4급 직원: <u>12년</u></p> <p style="padding-left: 20px;">라. 5급 직원: <u>18년</u></p> <p>② · ③ (생략)</p>	<p>제22조(정년) ① ----- -----.</p> <p>1. (현행과 같음)</p> <p>2.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나. -----<u>8년</u></p> <p style="padding-left: 20px;">다. -----<u>14년</u></p> <p style="padding-left: 20px;">라. -----<u>21년</u></p> <p>② · ③ (현행과 같음)</p>